



십량초 화장실보수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

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,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.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- 다 음 -

- I.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
- II.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(조달청 고시)
- III.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(조달청 고시)
- IV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
- V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
- VI. 「지방계약법」, 「판로지원법」, 「전자조달법」, 기타 입찰·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

〈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〉

- ◆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·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·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입찰·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(준공 이후 포함)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·간접적으로 금품·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
 -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
 -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·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
- ◆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·향응·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홈페이지: [www.gne.go.kr/전자민원마당/신고센터\(감사관\)/교육감신문고\(부패비리신고\)](http://www.gne.go.kr/전자민원마당/신고센터(감사관)/교육감신문고(부패비리신고))
 - 부패비리신고전화: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(☎1577-8539)
 - 스마트폰 활용 신고: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.



스마트폰 신고방법



☎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

-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이용에 관한 사항: 조달청(☎1588-0800)
- 공고, 개찰, 계약에 관한 사항: 양산교육지원청 계약담당 (☎055-379-3221)
-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: 양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1담당 (☎055-379-3251)

[유의 사항]

- ※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(모든 붙임 서류)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.
- ※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,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(또는 적용례)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1.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

용역명	삼량초 화장실보수 설계용역	
용역현장	삼량초등학교	
용역기간	착수일로부터 50일간	
용역개요	화장실보수공사 설계용역 1식 (과업지시서 참고)	
기초금액	추정가격	부가가치세
29,500,000원	26,818,182원	2,681,818원

※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,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.

2.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

- 가.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을 이용해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.
- 나.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입니다.
- 다. 지역제한(경상남도 양산시) 대상 용역입니다.
- 라.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(공제) 대상 용역이며,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마. 본 기술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.

3. 견적제출 참가 자격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, 「건축사법」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(업종코드 4817)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
- 나.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,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)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]부터 견적제출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가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
- 다.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.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

관」에 동의하고 전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- 라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5,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“조세포탈 등을 한 자”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.
- 마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“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”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전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.
- 바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, 전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**[붙임1]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**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4. 공동계약

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
5. 과업설명

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(과업지시서)로 대신합니다.

6. 전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

- 가.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을 이용하여 전자전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나. 본 건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.

7. 전적서 제출

가. 제출 기간: 2026. 8. 12.(수) 10:00 ~ 2026. 8. 18.(화) 10:00

※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- 나.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, 전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의 ‘입찰정보’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본 건은 조달청고시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7조(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)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.
- 라. 전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전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,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의 장애로 전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

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,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바. 견적서 제출 여부는 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/전자문서함/보낸문서함’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8. 견적제출의 무효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-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.

나.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- 1)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.
- 2) 특히, “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(또는 법인의 명칭), 대표자의 성명(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)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”, 입찰유의서 제2절 12-다-1)에 따른 “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”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-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9. 개찰 일시와 장소

가. 일시: 2026. 8. 18.(화) 11:00

※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10:00까지, 개찰은 재입찰 마감일 11:00에 실시합니다.

나. 장소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

※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10. 계약상대자 결정

가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, 예정가격 이하로서 **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%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**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**[붙임2] <별표1>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**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
- 나.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.
- 다. 예정가격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$\pm 3\%$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,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
11. 청렴서약서 제출

- 가. 본 건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(청렴서약제)가 적용됩니다.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,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‘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(<http://www.gne.go.kr>) ⇒ 재정과/자료실/청렴서약서’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12.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

- 가. 계약상대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[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중대재해처벌법 제4조)]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나.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**[붙임3] 안전보건관리계획서** 및 **[붙임4]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**를 작성하여 **본 용역의 감독관(사업담당자) 승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로 제출**하여야 하며,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
13. 기타 사항

- 가.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

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‘전자조달콜센터’ (☎1588-0800)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‘전자조달콜센터’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나. 본 건 참가자는 입찰유의서, 계약일반조건, 전자입찰 특별유의서,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, 전자입찰 이용자약관, 공고문,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. 만약,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다. 예비가격,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(G2B)의 ‘입찰정보/용역/공고현황/기초금액’, 개찰 결과는 ‘입찰정보/용역/개찰결과’ 와 경상남도 교육청 누리집 ‘정보공개/계약정보’ 에 게재됩니다.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11.

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(분임)재무관

【붙임1】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1쪽)

발주자	발주기관	발주부서	발주날짜
	발주내용		[] 공사 [] 용역 [] 물품 [] 기타
	수의계약 사유		
계약상대자 (확인인)	성명	소속	[] 개인 [] 법인 [] 단체 [] 기타
	연락처	주소	
	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		
①	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
②	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
③	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
④	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
⑤	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
⑥	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
⑦	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
⑧	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(붙임)재무관

계약상대자(확인인)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【붙임2】

각 서

업 체 명	
대 표 자	
소 재 지	
업종(등록)	

상기 본인(법인)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·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붙임 : <별표1>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.

20 . . .

업체명 :

대표자 : (인)

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(분임)재무관 귀 하

수의계약 배제사유

-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
-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, 담합행위, 입찰·계약 서류의 허위·위조 제출, 입찰·낙찰·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
 - ※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「낙찰자결정기준」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“4”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,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>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이때 ‘입찰공고일’은 ‘안내공고일’로 ‘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’은 ‘견적서 제출마감일’로 본다.
-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·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 - ※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.
-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 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(법인은 대표자)
 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존·비속인 사업자
 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
 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(배우자, 직계존·비속)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
 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
-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
-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
- ⑩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(용역)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. 다만,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(단, 제3절의 “1”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)

【붙임3】

안전보건관리계획서

■ 사업명: ○○○○	■ 업체명: ○○○○
■ 사업기간: 20 . . . ~ 20 . . .(0일간)	■ 연락처: 010-0000-0000
■ 사업장소: ○○	■ 소재지: 경남 ○○시 ○○
■ 투입 종사자수: ○○명	■ 대표자: ○○○○ (서명)

안전·보건관리현황	담당자 지정현황 (비상상황시 연락)	현장 안전·보건 관리책임자(정)		현장 안전·보건 관리책임자(부)		
		성명	연락처	성명	연락처	
	본사 안전·보건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	☐ 안전·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☐ 안전·보건관리 대행 ☒ 해당 없음 ☒ 가입 (사업개시번호: 000-00-00000-0) ☐ 미가입				

■ 안전조치 세부계획(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)

- (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)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
 - 예)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,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,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
- (안전보호장비 확보)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
 - 예)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,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
- (안전교육)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
 - 예)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,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
- (기계기구, 장비 등)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
 - 예) 전선 피복상태 확인, 전동 보호갓 설치,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,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
- (비상조치)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
 - 예) 대응체계: (중대재해)사고발생→응급조치→작업중지→초기대응(필요시)→긴급 대피→현장보존 및 보고→원인조사·대책 마련
 - 예) 비상연락망 구축: 119안전센터, 관내 병원, 관할 고용노동부,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

■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(도급인·수급인 확인)

※해당항목 ☒ 체크 ☐ 고위험작업 ☐ 중작업 ☐ 경작업

NO	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	적정성 확인 (O,X,해당없음)		비고
		수급인	도급인	
1	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			
2	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			
3	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			
4	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			
5	비상조치 체계 구축(비상연락망 등) 적정 여부			

사업담당자(감독관): ○ ○ ○ (서명)

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

(업체명)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확인·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.
2.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절한 보호장비를 지급·착용 지도하고,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.
3.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(업체명)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4.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,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.

20 . . .

업체명:

대표자: (인)

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(분임)재무관 귀하